

定 款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및 종류) ①이 회사는 마이다스 블루칩배당 증권 투자회사(주식) (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das Blue Chip Dividend Equity Fund라 표기한다.

② 회사는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며 주주는 채권 및 국내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회사는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와 배당성향이 높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이득 및 배당소득을 추구한다.

③ 회사는 법제231조 규정에 의한 종류형증권투자회사로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2조(목적) 회사는 자산을 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회사는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영업소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의 고용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광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 신문의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헤럴드경제신문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조주로 한다.

제7조(무액면주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하며, 총 발행가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 순자산액)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은 일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1. 종류A1 주식
2. 종류Ae 주식
3. 종류S 주식

②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이하“투자회사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삭제>

④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제13조(주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 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통장거래) 주주는 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체결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주식판매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주주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3.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삭제>

제17조(주권의 비상장). 회사는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주의 발행기간
2. 제1호의 발행기간 내에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제1호의 발행기간 동안 매일의 발행가액 및 주금 납입기일을 정하는 방법

②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지체없이 신주의 인수가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주식배정은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 식을 신주청약일의 익영업일(이하 "신주배정일"이라 한다)에 배정한다. 신주인수인이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청약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신주청약일의 제3영업일에 배정한다.

③의2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최초의 신주청약(해당 종류 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이고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청약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이 조에서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신주인수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에서 하여야 한다.

⑥회사의 신주 공모시 청약할 수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한한다.

⑦ 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제18조의2(주식의 판매기준 및 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주식을 판매한다.

1. 종류 A1 주식 : 제한없음
2. 종류 Ae 주식 :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함
3. 종류 S 주식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종류(S-T 및 S-P 종류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

②판매회사는 종류 A1, 종류 Ae 주식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매수하는 시점에 주주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③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주식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판매회사는 S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15 범위 내에서 보유한 기간(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 시 적용되는 당

회사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 각호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1, Ae : 없음

2. 종류 S 후취판매수수료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⑥ 제5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5항 2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환매의 청구) ①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235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삭제>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주식의 환매가격은 기준시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은 증권시장의 개장일을 말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증권시장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기준시간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 기준시간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 4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 22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3 조의 2(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주주가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주주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일부환매의 청구) ①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삭제>

③주주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 주식의 수가 1만주 미만이 되는 경우, 주주는 그 1만주 미만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 25 조(주식의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순자산액이 제 9 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결산일 전영업일(15 시 30 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에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5.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26 조(주식의 환매연기) ①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요구받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으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가. 투자증권등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회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의 2.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신탁업자, 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주식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3. 제 1 호 내지 제 2 호의 2 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가격,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라.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 1 항,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 27 조(주식의 일부환매) ①회사는 회사 재산의 일부가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주주,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29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한다.

② 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0조(주주명부)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자등록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삭제>

⑥회사가 제 2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주주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해산에 따른 청산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회사 사업년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주주총회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 ①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이사(이하 "이사"라 함)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 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 주식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 총수"로 본다.

제32조(주주총회의 운영)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이하 "이사"라 함)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

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31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33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정관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총수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 보호와 주주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의결권등)①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주주총회의 연기) ① 회사는 제32조 제2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주주총회(이하 “연기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연기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④제31조제6항에 의한 주주총회는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제37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개정(2013.11.8)

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39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이사·이사회

제40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회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③<삭제>

제42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사의 임기는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감독이사의 임기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43조(이사의 보선) <삭제>

제44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5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현금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삭제>
7. 기타 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50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

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51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하는 유가증권은 포함한다.)(이하 “지분증권”이라 한다)

1의2.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한다) 및 국내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

5. 법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식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하 “수익증권등”이라 한다)

7. 회사 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8.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9. 투자증권의 차입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의 2(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지분증권을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2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1. 지분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 1의2. 국내주식에의 투자는 회사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5. 수익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증권의 대여는 회사가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7.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한다.
8.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회사 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9.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회사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②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3 호 및 제 4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 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 월간 (사업년도 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53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에 투자하는 행위.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회사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6.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7.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회사재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총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 189 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 86 조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행위.
 9. 회사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52 조제 1 항제 5 호 내지 제 9 호, 이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 월간은 제 52 조제 1 항제 7 호, 이 조 제 1 항제 2 호, 제 4 호, 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의 신용 평가등급이 제 51 조제 1 항에서 정한 신용 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54 조(자산운용지시등) 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회사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이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4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다만, 보수의 상한은 회사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5.0% 이내로 한다.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6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장내파생상품 및 장 외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제6장 계산

제57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5월 15일부터 익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58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 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회사 자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사업년도 종료
2. 회사의 해산

⑤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는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회사 전체 주식과 당해 종류 주식별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자산의 평가)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을 시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단 다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 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자가 제공하는 가격
 - 가. 채권평가회사
 - 나.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신용평가업자
 - 라.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 바.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제238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0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공고일의 기준가격(당해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당해 종류주식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해당 종류주식을 최초로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종류의 주식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 포함)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1원으로 한다.

④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주식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게시한다. 다만, 주주가 없는 종류 주식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자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의2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 회사는 기준가격을 지체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⑤전항에 따라 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다) 는 집합 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보수 및 일반사무 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회사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4. 주식의 일부환매(환매분에 상당하는 투자회사보수 인출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 A1 주식

-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6.5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5.0
-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2. 종류 Ae 주식

-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6.5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2.5
-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3. 종류 S 주식

- 가. 운용보수율 : 연 1,000분의 6.5
-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5
- 다. 신탁보수율 : 연 1,000분의 0.2
- 라. 일반사무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0.4

제62조(자산의 운용비용 등)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전체 주주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의 주주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주주에게만 비용을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회사 전체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증권 예약비용
 6. 증권 결제비용
 7. 증권 등의 가격정보 비용
 8. 전체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9.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 9의2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 9의3 회사 재산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특정종류의 주주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로 구성되는 주주총회 관련 비용

제63조(이익분배 등) ① 회사는 이익금(당해 종류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동 분배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식(당해 종류주식)을 매입하는 것으로 한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당해 종류주식)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64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해산

제65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결의
3. 피흡수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2.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제66조(청산인회 보수) 회사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에게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00만원 이내에 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67조(정관의 변경) ①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회사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 종류의 변경. 다만, 회사 설립시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이하 "개방형투자회사"라 한다)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8. 그 밖의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통한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⑤제 4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 월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⑥주주가 제 4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로부터 1 월이내 또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기간(이하 “이의신청기간”이라한다)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제공)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또는 해산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해당 투자회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주주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 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주주에 대한 공시)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주주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 및 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이 정관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투자회사를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회사를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②전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

제70조(법규 적용 등)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법,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71조(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72조(합병) ①회사는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이사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회사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204조에 따른다.

제73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명: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주) 대표이사 **신 정 희** (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0**

이 정관은 2004 년 7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주 발행가액의 예외) ①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3조(주권 환매가격 등의 예외) ①제23조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15시(오후3시) 이전에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②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15시(오후3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제25조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일 직전 제2영업일 15시(오후3시) 경과 후부터 익일 15시(오후3시)이전까지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 년 8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8 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발행 주식의 종류) 이 정관 시행일 전에 발행된 이 회사의 주식은 종류 A1 주식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이사 임기의 소급 적용)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이사의 임기는 재임중인 감독이사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 조치) 이 정관의 2005년 6월 7일 시행된 부칙의 제2조 및 제3조는 2016년 7월 30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환매수수료)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